고용노동부	보도설명자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**배포 즉시**	배포 일시	2022. 11. 25.(금)
담당 부서	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	책임자	과 장 배영일 (044-202-7620)
		담당자	사무관 장지훈 (044-202-7621)

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, 근로손실일수로 집계할 경우 통계 왜곡 등의 우려가 있음

1. 주요 기사 내용

□ 11.25.(금) 매일경제, 운송거부는 근로손실일수 통계조차 안잡혀

ㅇ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 통계에 '사각지대'가 존재하는 점도 정부 대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.

ㅇ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통계지표는 `노사분규건수`와 `근로손실일수`가 있다. 두 지표 모두 계산 과정에서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노사분규만 포함하기 때문이다. 그 결과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이번 파업 등은 모두 계산에서 제외된다. 현행 노조법 체계에서 화물연대의 '집단운송거부'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 통계가 허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.

2. 설명 내용

□ 근로손실일수는 **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쟁의행위**로 인해 발생한 **사회적 손실**을 근로일수로 **측정**한 지표임

□ 그러나, **화물연대**는 통상의 **노동조합과 달리** 노동조합법상 **설립신고** 및 **교섭·노동쟁의 절차** 등을 **거치지 않고 있으며**,

○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'**노동관계 당사자**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**근로조건**의 결정에 관한 **교섭 과정**에서 **주장의 불일치**로 인해 발생한 **분쟁상태**'가 **아니므로**, 노동조합법상 **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움**

□ 따라서,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보아 근로손실일수로 집계하면 오히려 **통계를 왜곡**시킬 수 있고,

○ 집단운송거부도 **노동조합법상 보호**(민·형사상 면책 등)를 받는 **적법한** 파업 등 **노동조합의 쟁의행위**인 것으로 **잘못 인식**될 수 있음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